

보 수 규 정

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배우자는 월40,000원,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월20,000원”을 “배우자는 월 4만원, 첫째 자녀 월 2만원, 둘째 자녀 월 6만원, 셋째 이후 자녀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1명당 월 10만원,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”으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3조(가족수당) ① 임직원으로 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4인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0,000원,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20,000원을 지급한다. 다 만, 셋째자녀 이상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산금 월 80,00 0원(다만, 2011년 12월 31일 이 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 에게는 월 30,000원씩)을 지급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3조(가족수당) ① ----- ----- ----- 배우자는 월 4만원, 첫째자녀 월 2만원, 둘째자녀 월 6만원, 셋째 이후 자녀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1명 당 월 10만원,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 만원----- . <삭 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